

## 위 임 장

수 임 인 (대리인)	성 명	
	주 소	

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**공증인 이문수 사무소**에서 「공증인법」 제56조의2 (어음·수표의 공증 등)에 따른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  
(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와 정보 및 등본 수령 권한을 승낙함)

액 면	금	원정 (₩ )
발 행 일	년 월 일	발 행 인
지급기일		수 취 인
발 행 지		양 도 일
지 급 지		양 도 인
지급장소		양 수 인

☞ 인감증명서 첨부 (3개월 이내 발급) 및 어음 원본 지참 필요 년 월 일

위 임 인	성명(법인명)	(인감)
	주 소	
위 임 인	성명(법인명)	(인감)
	주 소	
위 임 인	성명(법인명)	(인감)
	주 소	
위 임 인	성명(법인명)	(인감)
	주 소	